

2023년 사업소 종합감사

□ 감사개요

- 기 간: 2023. 5. 8.~5. 22.
- 대 상: 3개 부서(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 감 사 반: 3명(감사팀장 외 2명)
- 범 위: 2021. 7. 1.~2023. 4. 30.
- 감사내용
 - 지출의 적정성 여부 확인, 편법·불법적 예산의 집행사항 적발
 - 계약업무 집행·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물품관리 실태 점검
 - 복무관리 실태 점검 등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확인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천 원)

합계		시정 (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건수	금액						
7	50	3 (50)	6	-	-	-	-

○ 처분(요구) 목록

연번	건명	수감부서	처분내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명)
				유형	금액(원)	
합계	7건		시정 3 주의 6	환수	50,000	-
1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의	-	-	-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
3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의	-	-	-
4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	주의	-	-	-
5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검사 관리 소홀	■■■■■■■■	시정 주의	-	-	-
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보조금 정산 미실시	■■■■■■■■	시정 주의	-	-	-
7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시정	환수	50,000	-

【 일련번호: 1 】

처 분 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임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통계목	적요	지출 금액	지출 일자	지출처
1	203-04 (부서운영)	연말 직원 노고치하를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858	2021. 12. 31.	○○○
2	203-04 (부서운영)	연말 직원 노고치하를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611	2022. 12. 29.	○○○

조치할 사항 □□□□□□□□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시고,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심사대상 사업 중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및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속초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와 계약업무 등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¹⁾ 3억 원 이상(전문, 그 밖에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5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공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속초시 계약업무 운영지침」 제2조제2호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이므로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지급번호	통계목	적요	추정금액	계약상대자
1371 (2022. 12. 8.)	201-02 (공공운영비)	지하수 사후관리 용역	109,861	□□□□

조치할 사항 □□□□□□□□□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속초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3 】

처 분 서

주의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임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통계목	적요	지출 금액	지출 일자	지출처
1	203-01 (기관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775	2022. 1. 28.	○○○

조치할 사항 ○○○○○○○○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시고,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주의 요구

제 목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처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심사대상 사업 중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및 「속초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속초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제도와 계약업무 등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방적인 감사로 일상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계약심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¹⁾ 3억 원 이상(전문, 그 밖에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5억 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이므로 사전에 심사를 요청하여 그

1)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 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속초시 계약업무 운영지침」 제2조제2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지급번호	통계목	적요	추정금액	계약상대자
173 (2022. 5. 3.)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소각시설 폐기물 물품 구입	29,885	□□□□□

조치할 사항 ■■■■■■■■■■■는

[주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속초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검사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3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

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 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 사항은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검사 13건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이전 실시하는 따로 검사 7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단위: 건 수)

구분	정기검사			최종검사		
	대상	실시	미실시	대상	실시	미실시
2021년	5	-	5	-	-	-
2022년	8	-	8	7	-	7

조치할 사항 ■■■■■■■■■■는

[시정] 하자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 규정 및 기준 등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보조금 정산 미 실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 으로 <표 - 1>과 같이 보조금으로 교부 결정하고 지급해 오고 있다.

<표 - 1> 2022~2023 보조금 교부 결정 내역

(단위: 천 원)

연도	총 사업비	기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시설비
2022년	816,155	169,370	616,785	30,000
2023년	859,750	178,890	650,860	30,00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지방보조금액의 확정)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표-2>와 같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적보고서)정산서를 접수하였음에도 2023. 5. 16. 감사일 현재까지도 2022년 3분기와 4분기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 2> 2022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교부일	지급액	정산서 접수일	정산 검사일
1분기	2022-01-07	222,965	2022-04-08	2022-08-16
2분기	2022-04-13	172,566	2022-08-10	2022-08-16
3분기	2022-07-25	183,581	2022-11-07	23. 5. 16. 현재 정산 미실시
4분기	2022-11-01	207,043	2023-02-10	23. 5. 16. 현재 정산 미실시

조치할 사항 ■■■■■■■■■■는

[시정] 정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서

시정 요구

제 목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¹⁾의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은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물품 구매 및 수리·제조·기타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표]와 같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금50,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 개정 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1. 1. 1.)

[표] 강원도 지역개발채권 미확인 현황

(단위: 원)

지급번호 (일자)	적 요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미징구 채권금액
계	-	-	-	50,000
166 (2022. 4. 29.)	건설기계(굴착기) 수리비용 지출	□□□□□	1,953,600	25,000
521 (2022. 12. 9.)	물품매입요구서(사무실 물품 구입)	□□□□□	1,980,000	25,000

조치할 사항 ■■■■■■■■는

[시정]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업체로부터 5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징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